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환경부 자료 제공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납·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유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기로 하였다.

동 규칙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아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9월까지 사용제한 중금속의 종류·농도기준 등에 관한 권장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 1. 개정 이유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높이고 국내기업들의 환경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도록 권장하고,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의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주요 내용

### 2-1. 포장재에 함유되는 중금속에 관한 권장기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포장재에 함유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의 권장기준을 고시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한다.

## 2-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절차 및 적용확대(안 제7조)

제조사 등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예외인정 여부를 판단·결정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하며, 제조사등이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 및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그 예외인정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 2-3. 전문기관의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한국환경자원공사법·(법률 제7023호, 2003. 12. 30. 공포)의 개정 및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296호, 2004. 12. 31. 공포)의 제정에 따라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는 등 관계 전문기관의 명칭을 변경함.

###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 석유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약사법”을 “· 약사법·”으로 한다.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사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사 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표준기본법”을 “·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한다.



1.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 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2.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의 예외인정) ① 제조자들은 제품의 특성상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포장재질 · 포장방법이 없거나 대체포장비용 또는 수입제품 포장재의 교체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로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4조에 따른 기준(이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라 한다)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그 제품을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예외인정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품의 종류와 포장재질 · 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2.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예외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예외인정(이하 “예외인정”이라 한다)여부를 제조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는 때에는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비슷한 제품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제조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그 포장재질 · 포장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1.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
2.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⑦ 제6항에 따라 표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6항제2호에 따른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의 예외인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㉞

〔표 1〕 포장(packaging)관련 중금속 규제사례

구분	미국	EU	일본
규제방법	포장재 중에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등 중금속 총 함유량 규제	포장재 성분 중에 포함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 총 함유량 규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기준은 없음. 다만, 주요 수출대상국인 EU와 미국이 포장재의 중금속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제품 수출을 위해 포장재의 중금속 규제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음
규제 대상	포장재, 잉크, 염료, 물감, 점착제, 안정제 등으로 포장재 제조 시 사용될 수 있는 원료 및 부자재까지 폭넓게 규제	소재나 모양에 관계없이 시행하는 물품으로, 제조자가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물품의 보관, 보호, 취급, 배달, 표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또한 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회용품은 포장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	중금속(Pb, Cd, Hg, Cr+6) 기준 초과 포장재는 납품받지 않음 제품포장, 카톤, 부품반송용 포장에 사용되는 자재(나무상자, 호일, 트레이, 릴, 스틱, 잡지봉투, 완충재, 스테이플러, 시트, 랩필름, 골판지, 도로, 잉크, 테이프, 밴드, 라벨, 쿠션 등) 유해물질 : 중금속 성분(Pb, Cd, Hg, Cr+6)을 공통적으로 관리하며, 포장재용 자재는 품목별 추가 관리항목 존재(예: 도로의 경우 유기주석화합물 등)
규제 기준	$\Sigma(\text{Pb}+\text{Cd}+\text{Hg}+\text{Cr}+6)$ 100ppm 이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Sigma(\text{Pb}+\text{Cd}+\text{Hg}+\text{Cr}+6)$ : 600ppm(1998)→250(1999)→100ppm(2001)	- $\Sigma(\text{Pb}+\text{Cd}+\text{Hg}+\text{Cr}+6)$ 을100ppm 이하로 관리
규제 지역	지아, 일리노이즈, 아이오와,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미주리,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펜실바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 등 19개 주	2001년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2005년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 참고 :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포장재에 중금속을 함유한 잉크 사용 금지 -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해 중금속 ( $\Sigma(\text{Pb}+\text{Cd}+\text{Hg}+\text{Cr})$ ) 함량이 100ppm 이하인 잉크 사용만 허용 기업 스스로가 수출품·내수품을 막론하고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기준·지침을 마련해 규제



## 포장과 법률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②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li> <li>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li> <li>3.~5. (생략)</li> <li>③·④ (생략)</li> </ol> <p>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자원재생공사</li> <li>2.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li> <li>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증기관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li> </ol> <p>제7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의 종류와 포장재질 또는 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li> </ol>	<p>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_____</p> <p>-----각 호_____</p> <p>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석유사업법」_____</li> <li>2. 「약사법」_____</li> <li>3. ~ 5. (현행과 같음)</li> <li>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li> </ol> <p>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_____</p> <p>_____ 각 호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li> <li>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li> <li>3. 「국가표준기본법」_____.</li> </ol> <p>제7조(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 ① 제조자등은 제품의 특성상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포장재질·포장방법이 없거나 대체포장비용 또는 수입제품 포장재의 교체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로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4조에 따른 기준(이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라 한다)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그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예외인정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2.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p> <p>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 또는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p> <p>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 (생략)</p> <p>②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의 종류와 포장재질·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li> <li>2.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li> <li>3.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li> </ol>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예외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예외인정(이하 "예외인정"이라 한다)여부를 제조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는 때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비슷한 제품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⑥ 제조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그 포장재질「포장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li> <li>2.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li> </ol> <p>⑦ 제6항에 따라 표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⑧ 제6항제2호에 따른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_____.</p> <p>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_____.</p>